

定 款

1971年 10月 27日 制定

1981年 3月 27日 改定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協會는 社団法人 韓國國立公園協會라고 한다.

第 2 條 (事務所) 本協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支部 또는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 3 條 (目的) 本協會는 우리 나라의 國立公園, 市·道·郡立公園, 自然公園, 觀光地 등 秀麗한 自然景觀地域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여 國民保健의 增進과 精神生活의 醇化에 寄與함과 아울러 자랑스러운 國土의 自然美를 保全하여 우리의 後孫들에게 繼承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業) 本協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國立公園의 概念과 指定趣旨의 普及에 關한 事業
2. 國立公園의 理想的인 開發과 運營을 위한 調査研究
3. 國立公園地域內의 學術的 價値가 있는 資源에 對한 調査研究
4. 國立公園의 觀光과 文化的 利用에 對한 指導와 公園計劃 및 設計
5. 公園管理廳의 依賴를 받는 公園施設 및 資源의 管理와 公園事業의 代行
6. 國際自然保存聯盟(IUCN) 및 外國 國立公園協會와의 交流
7. 기타 本協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및 附帶事業 一切

第 2 章 會 員

第 5 條 (資格) 本協會는 다음 會員으로 構成한다.

- (1) 一般會員：本協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所定의 入會節次를 거친 者
- (2) 終身會員：本協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會

費 20萬원 以上을 一時에 納入하여 理事會의 審査를 거친 者

(3) 特別會員：本協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公園管理業務에 從事하는 者

(4) 團體會員：本協會의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入會節次를 거친 機關 또는 團體

第 6 條 (權利 및 義務) (1) 會員은 本協會의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과 重要事項에 對한 議決權을 가지며 本協會 活動으로 因한 惠沢을 平等하게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特別會員은 會費納付의 義務가 免除되고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지 아니한다.

(2) 會員은 本協會의 定款 및 決議事項을 遵守하고 會費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第 7 條 (資格喪失) (1) 會員은 脫退, 除名, 死亡의 境遇 그 資格을 喪失한다.

(2) 會員이 2年 以上 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脫退한 것으로 본다.

第 8 條 (既納金 處理) 會員이 脫退 또는 除名될 境遇 既納한 入會金과 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第 3 章 任 員

第 9 條 (定數) 本協會에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包含하여 理事 7人 以上 15人 以下와 監事 1人을 둔다.

第 10 條 (選任) 本協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會員 中에서 選任한다. 다만 最初의 任員은 發起人 總會에서 選任한다.

第 11 條 (任期) (1) 會長, 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2) 任員의 欠員은 理事會가 補選하고 다음 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 이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12 條 (職務) (1)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本

協會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 (2) 會長은 本 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 (3)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미리 定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하며 會長 欠員 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4) 監事는 本 協會의 會計와 業務를 監査한다.

第 13條 (任員의 報酬)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 第 14條 (顧問) (1) 會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받아 若干名의 顧問을 推戴할 수 있다.
- (2)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4 章 會 議

第 15條 (會議) 本 協會의 會議는 會員總會와 理事會의 2 種으로 한다.

第 16條 (會員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2 種으로 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1 月中에 이를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한다.

- 1. 會員 3 分の 1 以上の 召集理由와 附議事項을 提示하여 要求할 때
- 2. 理事會의 決議로서 要求할 때
-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 17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定款의 變更과 解散 및 이에 關聯된 事項
- 2. 任員選出
- 3. 予算 및 決算에 대한 承認
- 4.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의 承認
- 5. 會員의 年會費 및 納付 回数
- 6. 기타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重要事項

第 18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諸規程의 制定 및 改定
- 2. 會員의 加入, 脫退 및 懲戒에 關한 事項
- 3. 予算編成과 運用
- 4. 重要事業計劃 樹立과 執行
- 5. 總會附議事項의 審議
- 6. 기타 總會의 委任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重要事項

第 19條 (召集) (1) 總會 및 理事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2) 總會의 召集은 그 日時·場所 및 討議事項을 明示하여 開會 10日前까지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 理事 3 分の 1 以上이 召集을 要求할 때 이를 召集한다.

第 20條 (議長)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미리 指名한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 21條 (議決權) 總會에 있어서 會員의 議決權은 平等하다.

第 22條 (議事定足數) 總會와 理事會는 議決權의 過半數가 參席하여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總會의 境遇 定款의 改定, 解散에 關한 議決에는 3 分の 2 以上이 參席하여야 한다.

第 23條 (議決定足數) 總會와 理事會의 議決은 參席者의 過半數로 한다.

第 24條 (書面議決) 議長은 緊急을 要하거나 그 밖의 必要한 境遇에 總會의 承認을 받아 總會와 理事會의 議決을 書面으로 할 수 있다.

第 25條 (議事錄) 總會와 理事會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長 및 參席任員이 署名捺印하고 會議開催한 날로부터 2 週日內에 議事錄 寫本 添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5 章 專門委員會와 事務局

第 26條 (專門委員會의 設置) (1) 本 協會의 事業 遂行上 必要할 때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專門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2) 專門委員會의 機構와 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 27條 (事務局設置) (1) 本 協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 1 人과 職員 若干名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長과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3) 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第28條 (財産) 本協會의 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寄捨金
 2. 入會金과 會費 및 寄附金, 助成金, 補助金 등 贊助金
 3. 所有物
 4. 本協會 事業으로 發生한 取入
 5. 기타 諸取入

第29條 (基本財産) 다음의 財産을 本協會의 基本財産으로 한다.
 1. 所有物
 2. 基本財産으로 指定한 贊助金
 3. 기타 理事會가 基本財産으로 決議한 財産

第30條 (經費) 本協會의 經費는 會費, 贊助金과 本協會 事業으로부터 發生한 收益 및 기타 取入金으로 充當한다.

第31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事業 및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7 章 解 散

第32條 (解散) (1) 本協會는 會員 3分之 2 以上의 同意와 主務官庁의 許可를 받지 않고는 解散하지 못한다.
 (2) 本協會가 解散된 境遇에는 總會員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本協會의 모든 財産을 主務官庁의 承認下에 本協會와 目的이 類似한 法人體에 讓渡하거나 또는 같은 目的을 위해 處分한다.

第 8 章 附 則

第33條 (定款改定) 本協會의 定款改定은 總會의 議決을 거친 다음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한다.

第34條 (細則制定)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則은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定한다.

第35條 (發効)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法人設立 許可를 받아 設立 登記를 마친 날로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끝.

短 信

公園施設物図集 (公共施設物編) 完成

国立公園을 비롯한 自然公園内部施設物이 自然景觀에 調和되지 못하거나, 週邊環境에 어울리지 못하는 色感 등 많은 問題點을 드러내고 있음을 考慮하여 建設部는 우선 公共施設物에 대한 図面集을 發刊하였다.

韓國国立公園協會에 委囑하여 만든 이 図集은 標識板·案內板·簡易公衆便所·벤취·파고라·飲水台·照明燈 등 17個部門에 걸쳐 山岳型·丘陵型·海岸型·都市型 등 立地特性에 따라 標準을 달리하고 平面·立面·断面과 함께 色相·材料·規格 등이 明示되어 있으며 簡略한 說明과 設置上의 留意事項이 記錄되어 있다. 120그램 아트지 옵세트인쇄인 이 図集은 호화로운보다 實務의인 利用에 便利하도록 製作되어 各市·道에 配付됐다. 이 作業을 受託했던 韓國国立公園協會는 이 図集의 實際利用面에서 問題點, 隘路事項 등이 나타나면 이를 補完하여 다른 部門의 施設物과 함께 自體의인 公園施設物 図集을 發刊할 計劃으로 資料들을 蒐集하고 있다.